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나2668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208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경북 의성군 D 답 1,623㎡에 관하여 2020.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9. 29. 접수

제162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2014. 4. 25. 원고와 (차량번호 1생략) 트랙터 차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지입차주이며, 피고는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2016. 11. 8.경, C이 위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5703호로 C에 대하여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 및 체납된 관리비 등 합계 16,0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20. 9.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북 의성군 D 답 1,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2020.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경북 의성군 E 답 1,587㎡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지목이 동일하며 면적도 유사한데, 이 사건 처분행위와 근접한 시기(2020. 12. 24.)에 30,000,000원에 거래된 바 있는 점, ② 피고는 2015. 9. 14.에도 동생인 C의 다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 소유였던 경북 의성군 F 전 387㎡, G 전 777㎡, H 전 407㎡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행위 역시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루어질 무렵인 2020.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주식회사 I에게 C의 채무 합계 2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20.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C의 채권자 J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의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로 매매대금 대부분이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고, C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범